

「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식품등의 기부와 나눔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식품 등의 절약 및 사회적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및 책무(안 제3조~제5조)
-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사업 경비 예산 지원 규정(안 제7조)
- 협조요청, 지도·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에 근거하여 식품등의 기부·제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본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는 식품등의 기부와 배부 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, 시민복지 증진과 사회 공동체문화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본 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